1991. 12. 4

# 地方議會議員 書面 答辯資料 一 金 善 奎 議員 一

社會福祉事業 및 施設의 運營 (療養施設 設置 基準)

家庭福祉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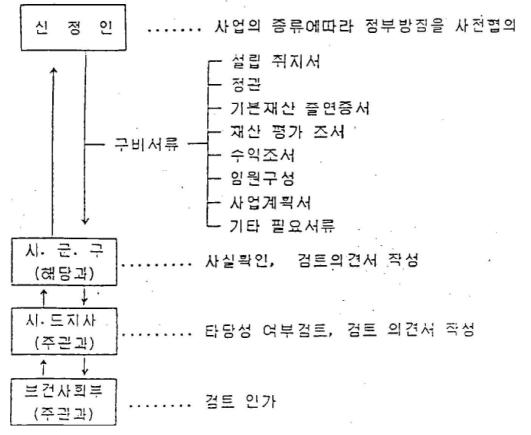
## 社會福祉施設 設置 基準

- o 關係 法令
- O 認可申請 및 處理 節次
- o 施設別 設置基準(療養施設)

## 사회복지사업 및 시설의운영

— 모든사업은 법인설립을 선행 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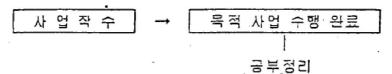
- □관계법령
  -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.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및 시행규칙 제6조
- □ 인가신청 및 처리절차
  - 인가신청 : 관할 구청장은 경유하여 시, 도지사가 보건사회부장관에 제출
  - ㅇ 처리절차



※ 목적용 기본재산의 시설종류와 규모: 별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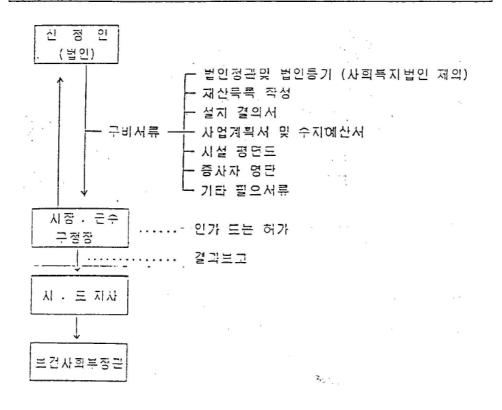
#### □ 법인설립후 절차

- 1. 법인설립 등기
  - . 신정인 → <u>관합등기소(등기)</u> → <u>결 과 브 고</u> 시 · 군 · 구 시 · 도 지 사 보건사회부장관
- 2. 사업추진



3. 시설의 인ㆍ허가

시설의 중류에따라 재산규모 예산규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함 - 해당 관련 법규 적용 : 아름 노인 모자 기타등 -



### □ 시설별 기준

시설일 구분	양 로 시 설	느인요양시설	실비양로시설	실비노인요양시설
1. 규모	입소정원 : 50 인	입소정원 : 50 인	입소정원 <b>:</b> 50 인	입소정원 : 50 인
	이상이어야 한다.	이상이어야 한다.	이상이어야 한다.	이상이어야 한다.
	다만, 다른 노인	다만, 다른 노인	다만, 다른 느인	다만, 다른 노인
	복지시설에 병설	복지시설에 병설	복지시설에 병설	복지시설에 병설
	할 때에는 30인	할 때에는 30인	할 때에는 30인	할 때에는 30인
	이상이어야 한다.	이상이어야 한다.	이상이어야 한다.	이상이어야 한다.
2. 설비	가. 거실	가. 내지 타. 는	양르시설의 설비	노인요양시설의
시설	나, 사무실 및	양로시설의 가.	시설과 같음	설비시설과 같음
	. 숙직실	내지 타. 와	,	
	다. 식당 및 조	같음.	g - 8	4
	리실		e E	
	라. 세면장 및	·-:		В
	독욕실			
	마 세탁장 및			
	세탁물건조장			
-	바. 으락실		9	
	사. 화장실			
	아. 의무실			

시설일 구본	양 로 시 설	느인요양시설	실비양로시설	실비느인요양시설
	자. 창고 및 부 속 시설 차, 급수 및 배 수 시설 카. 등화설비 타. 소화설비	파. 간호사실 하. 생활브조원실 거. 물리치료실		
기즌	(1) 합숙용 거실 외에 부부동	가. 거실 (1) 내지 (7)은 양로시설의 (1) 내지 (7)과 끝음.	(1)독신용·동거용· 합숙용 거실을 병설은용할 수 있다. (2) 내지 (7)은	합숙용 거실을

시설 구분	양로사설	느인요양시설	실비양르시설	실비느인요양시설
	에는 , 합숙용		내지 (7)과 같음.	(2) 내지 (9)와
	거실을 남실	a		같음.
3 2	및 여실로			(e)
a.	각각 구분하		2	a s
	여야 한다.			
	(3) 이용자 1인		80	
	당 거실면적			,
	은 3.3제곱			
	미터이상이어	140		
	야 한다.		36	
			±	
ay s		***\ 	E	
	*	. *	U.	
		a a	8 6 as 8	
	(4) 합숙용거실		S 6 5	
	1실의 정원	Acquit.	-	3
	은 6인이하	я		
	이어야 한다.		a (5)	
	(5) 합숙용거실에			

시킬 구본	양 르 시 설	: 노인요양시설	실비양르시설	실비느인요양시설
8 5 -	는 이용자의	И		8
	생 <del>활용품을</del>	£ a	Sec.	2.3
	각자 별도로			2
- 1	브관할 수		*	
	있는 브관시	~		
	설을 설치하			*
	여야 한다.			
	(6) 적당한 난방 및 통등장치		Si	
	를 하여야			*
	한다.	6		*
	- 1. (7) 채광·조명			
	및 방습설비		•	×*
	를 갖추어야		, r	Fig. 1
	한다.			
		(8) 느인질찬의		
11		증류 및 정		e: .
	5	드에 따라		
	ŏ	특별거실을		
		둘 수 있다.		2

시설일 구분	양르시설	느인요양시설	실비양르시설	살기느인요양시설
		9) 거실면적의 7 분의 1이상 의 면적을 창으로 하여 직접 외기에 접하여 개방 가능하드록	*	
	리실:채광 및 환기장치	양로시설의 나. 내지 바.와 같음.	나, 내지 바. 는 양르시설의 나. 내지 바. 와 같음.	
	장치를 하여 야 한다. 다. 오락실:자유 로이 이용할 수 있는 적 당한 근화시			
	설과 오락기		<i>a</i>	e e

시설		양 로시 설	노인요양시설	실비양르시설	실비느인으앙시설
9		구를 비치하		u o	
	āi	여야 한다.		* 3	в в
	라.	화장실	9		
	(1)	수용인원 15		(A	
		인까지 I개		6	2
(*)		이상의 대변			
		기를 설치하:	12		
60		고 매 15인			
		올 초과할	8		a
		때마다 1개		~ 0	
		를 증설하여			
		야 한다.			
	(2)	남자용 및			1. 16
		역자 <u>용으로</u>	К		• 10
60	8	구분하여야	F 3		10.4
(20)		하며 남자용		2 %	
	_	에는 대소변		* © 9	9 (1) E
		기를 따르	*	-	*
909		설치하여야		,	
		한다.			

선택 구분	양로시설	노인요양시설	실비양로시설	실비노인요양시설
*	(3) 대변기 수의			
	3분의 I이		ar É	
,•	상을 수세식			
	양변기로 설		(10)	
	치하여야		(0)	•
	한다.		€°	
	마. 의무실: 진료		N.	
	에 필요한		e	
	상용의약품 •			
	위생재료 도			8
	는 의료기구			w)
	를 갖추어야		a.	
93	한다.	it.		<u> </u>
	바. 기타			
	(1) 복드·화장실			
	,그 밖의 필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
	요한 곳에		*	-
	약간상용등 <u>을</u>			
	설치하여야	Ÿ		TE T
	한다.	Ti .		

시설일 구본		양크시설	느인요양시설	실비양로시설	실비느인요양시설
	(2)	계단의 경사	10 P	4.	
		는 완만하여			₹ -
		야 한다.	# <b>.</b> 투어이		
			사. 경사로 : 거실		
			이 2층이상일		
			경우 1개이상의		
			경사로를 설치하	ה	
			여야 한다. 다만,	*	
			승강기를 설치한		
			경우에는 예외르		
			한다.	8	
3. 직원	가.	시설의 장	가. 내지 다. 는	가.내지 차.는	가. 내지 카. 는
의	<b>ч.</b>	충무 -	양르시설의 가.	양르시설의 가.	느인으양시설의
걔[조]	다.	생활지도원	내지 다.와 같음.	내지 차. 와	가. 내지 카. 와
기존	-	(여자를 수	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 •	같음.	같음.
10		용하는 시설	8	ø	a.
	•	에는 여자생			
		활지드원 <b>을</b>			
		무어야 한다)			
	탁.	생활보조원	라. 생활보조원		

시설일 구분	양로시설	노인요양시설	실비양로시설	살비느인요양시설
	(입소자 20	(임소자 7		
	인당 1인이	인당 1인이		39
	상을 두어야	상을 두어야	æ	5 # F
	한다)	한다)		± 8
	마. 의사 또는	마, 의사 또는	16 16	
	촉탁의사	측탁의사	•	
	F			20 20
	바. 간호사 드는	바. 간호사 드는		
	간흐조무사	간호조무사	6	8
	(입소자 50	(일소자 25		
	인당 1인이	인당 1인이		
2.5	상을 두어야	상을 두어야	n 19	
	한다)	한다)		
	사, 사무원(입소	사. 물리치르사	1#3 ∜	ε,
	자가, 100 인	(시설당 1		
	이상인 시설	인이상을 두	5	
	의 경우에	되, 입소자가	. I	
	한한다)	100 인을 초	36.	
	아. 영양사(입소	과할 때마다	*I	
	자가 50 인	1인씩을 더	¥	

시설의 구본	양 로 시 설	노인요양시설	실비양로시설	실비느인요양시설
2	이상인 시설	두어야 한다)		
	의 경 <b>우에</b>	아. 사무원(입소		- 1
	한한다)	자가 100인		
	자. 취사부(임소	이상인 시설		
100	자 50인당	의 경우에	. *	
	1 인이상을	한한다)		
	두어야 한다)	자: 영양사(입소		
	차. 세탁부 (입소	자가 50인		
	자 50인당	이상인 시설		8
	I 인이상을	의 경우에		
	두어야 한다)	한한다)	*	8
		차. 취사부(입소	а	
	-	자 50인당	r	
	±1	1 인이상을		
		두어야 한다)	n R	
		카. 세탁부(입소		
		자 50인당		
		1 인이상을		
8		두어야 한다)		,
		1. 1 7 2 12		

비고: 직원의 구분

생활지도원: 양로시설·노인요양시설·실비양로시설·실비노인요양시설· 유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에 대하여 건 강유지·여가선용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·지도 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격증소지자

생활보조원 : 양로시설·노인요양시설·실비양로시설·실비노인요양시설·유 료양로시설 또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지도원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

상담지도원: 노인복지회관 또는 노인복지주택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건 강유지·여가선용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·지도하 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이상의 자 격증 소지자